

「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3조)
- 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1조, 제9조,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존 조례에서 위원회에 대한 단순 설치 규정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운영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제12조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조항 신설을 통해 양성평등기금 운용의 위탁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,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위탁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관리 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.